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병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1873

발의연월일: 2021. 8. 2.

발 의 자:김병기・박 정・안민석

오영환 • 문진석 • 박성준

기동민 · 김영주 · 이수진

전용기 · 윤준병 · 서영교

이정문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.

행정재산에 대한 사용 • 수익허가와 그에 관련된 행정행위는 행정기 본법 제2조 제4호의 처분에 해당하여,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처분의 절 차(사전통지, 이유제시, 의견청취) 등 각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.

그러나, 현행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7조제5항은,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, 관리위탁 받은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"전대(轉貸)할 수 있다"라고 규정하여, 관리위탁 받은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단순 "임대차(賃貸借)"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음.

실제로, 지방자치단체는 시설관리공단 등에 다수의 시설(행정재산) 을 관리위탁하고 있으나, 동 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사용수익을 하도록 할 때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도 하고 사용수익 허가를 하기도 하는 등 혼란이 있는 상황이고, 법원도 "전대(轉貸)"라 는 문구로 인하여 그 법적 성격에 대하여 판결이 엇갈리고 있음.

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제3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, 최종 사용수익자에 대하여 사용수익허가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, 동규정의 문구를 정정하여 분쟁을 예방하고, 사용수익허가자가 행정행위의상대방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각종 절차규정의 보호를 받도록 하기 위함임(안 제27조제5항).

법률 제 호

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7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.

법률 제18086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27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 산을 제3자에게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법률 제18086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2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21일 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했

정 개 아

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 ① 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 ① ~ ④ (생 략)

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 • 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 대(轉貸)할 수 있다.

⑥ ~ ⑧ (생 략) 법률 제18086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

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(轉 貸)할 수 있다.

⑥ ~ ⑧ (생 략)

~ ④ (현행과 같음)

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 · 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사 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 다.

⑥ ~ ⑧ (현행과 같음) 법률 제18086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

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・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사 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 다.

⑥ ~ ⑧ (현행과 같음)